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865
----------	------

2021년 4월 28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8일

다. 상정일자

-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0. 12. 17. 상정·수정안 가결)
- 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1. 4. 28. 상정·번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

가. 제안이유

- 2012년 이후 8년간 동결된 상수도 사용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 사업의 재정 적자를 개선하고, 시설 투자 및 상수도 운영 시스템 고도화 등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 급수업종을 4개 → 3개로 간소화하고, 3단계의 누진체계를 단일요금체제로 개편하여 요금부과의 공평부담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급수업종 중 공공시설, 학교 등에 적용하는 공공용을 2022년부터 일반용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일반용 요율을 적용받도록 함(안 별표 1 및 별표 2).
- 상수도 사용요금의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2021년, 2022년, 2023년 별로 단위( $m^3$ )별 요금단가를 조정함(안 별표 2).
  - 1) 가정용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단가를 적용하도록 함.
  - 2) 옥탕용과 일반용은 누진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되, 2022년부터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단가를 적용함.
  - 3) 공공용은 누진체계를 2단계로 간소화하여 적용하고, 2022년부터는 일반용 요금단가를 적용하도록 함.

사 용 요 금		
구분	사용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가정용	0~30이하	360
	30초과~50이하	550
	50초과	790
욕탕용	0~500이하	360
	500초과~2,000이하	420
	2,000초과	560
공공용	0~50이하	570
	50초과~300이하	730
	300초과	830
일반용	0~50이하	800
	50초과~300이하	950
	300초과	1,260



사 용 요 금(원/㎡)				
구분	사용구분 (㎡)	2021년	2022년	2023년부터
가정용	구분 없음	430	500	580
욕탕용	0~500	490	570	620
	500 초과	510		
공공용	0~300	920	폐 지 (일반용으로 통합)	
	300 초과	1,040		
일반용	0~300	1,020	1,160	1,270
	300 초과	1,150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재효)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업의 재정 여건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년간 동결된 수도요금을 현실화(인상, 업종 통합, 누진요금 부과방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현황

- 서울시는 2012년 수도요금 인상 이후 유수율 향상<sup>1)</sup> 등 경영효율화를 통한 자구노력으로 지난 8년간 수도요금 인상을 동결해 왔지만, 지속적인 생산원가<sup>2)</sup> 상승에 따라 결국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3년 92.0%에서 2019년 80.1%까지 하락하여 행정안전부 권고 비율인 90%에 크게 부족한 상황이며, 수돗물 판매단가는 566원/ $m^3$ 으로 타 광역시<sup>3)</sup> 평균의 80%, 특히 가정용은 70%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음.

#### <수도요금 현실화율>

(단위: 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생산원가(/ $m^3$ )	618	639	673	697	702	713	707
판매단가(/ $m^3$ )	569	569	568	569	566	566	566
요금 현실화율	92.0	89.1	84.5	81.7	80.7	79.4	80.1

1) 유수율 향상 현황 : '12년 94.5% → '20년 96.1%

2)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원수구입비, 자본비용, 감가상각비, 수선교체비, 경상이전, 운영비 등

3) ('19년 기준 톤당) 부산시 854원, 대구시 633원, 인천시 625원, 대전시 547원, 광주시 655원, 울산시 849원(대전의 경우 평균 판매단가는 서울시보다 낮지만, 가정용 판매단가는 서울시보다 높음)

<타 광역시와 수도요금 수준 비교>

(단위: 원, %)

구 분	생산원가 (/m³)	판매단가 (/m³)	요금현실화율	업종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서울시	707	566	80.1	403	808	988	477
광역시 평균	802	694	87.1	576	1,006		872

- 2019년 상수도사업본부 재정수입 규모는 총 8,666억원<sup>4)</sup>으로 이중 사용료수익이 89.2%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요금 인상이 전제되지 않는 한 향후 재정수입 규모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급수인구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량 감소,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완료<sup>5)</sup>에 따라 그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음.

반면, 상수도시설물 노후화<sup>6)</sup>에 따른 노후 시설물의 선제적 유지관리 및 하절기 수돗물 수요 급증에 따른 수돗물 생산시설 확충 등의 필요에 따라 중기 투자수요는 재정수입 규모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중기 투자수요 및 재정수입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투자수요	51,599	9,891	11,071	11,362	9,731	9,544
재정수입	42,051	8,365	8,392	8,418	8,436	8,440

4) 사용료수익 89.4%, 급·배수공사수익 2.8%, 시설분담금수입 3.3%, 타회계전입금 3.3%, 기타 1.3%임

5) 급수인구 감소에 따른 사용료수익 감소,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급·배수공사 수익 및 시설분담금 수입 감소

6) 상수도시설물 노후화 지수(  $\frac{\text{사용연수}}{\text{대구연한}}$  ) = 평균 82.1%(기전설비 88.9%, 구조물 82.6%, 상수도관 74.7%)

## 2)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 등 투자수요 관련

-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 생산시설 확충, 노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스마트 상수도 구축 등에 향후 5년간 9,784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중기 투자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2021년 ~ 2025년 상수도시설 투자계획>

(단위: 억원)

분 야	사 업 명	사업비	비중
<b>계</b>		9,784	100
수돗물 생산시설 확충 ①	사용연수 경과 노후 시설물 등 지속적 정비	4,507	46.1
	생산시설 확충 및 취수원 다변화 추진	1,676	17.1
	친환경 무연계량기 도입 및 친환경 상수도 운영시스템 구축	263	2.7
	소계	6,446	65.9
스마트 상수도 구축 ②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돗물 관리	68	0.7
	여의도 아리수 혁신지구 운영	22	0.2
	<b>Online 원격검침 대폭 확대</b>	<b>2,340</b>	<b>23.9</b>
	소계	2,430	24.8
상수도 전문성 강화 ③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전문성 향상 추진	25	0.3
	민간기업의 역량 배양으로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15	0.2
	소계	40	0.4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 ④	상수도관망 상시 모니터링(13,504km)으로 관청소 및 교체 추진	153	1.6
	상수도관 주기적 물청소 강화 및 주택내 노후 급수관 교체	415	4.2
	음용율 향상	300	3.1
	소계	868	8.9

- 세부적으로 수돗물 생산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는 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가동률<sup>7)</sup>이 100%에 근접하거나 초과하고 있고 상수도시설의 노후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없는 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단위 : 천m<sup>3</sup>/일)

구분	총괄	광안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7) 2020년(1월~9월)가동률(%)	96.8	92.0	92.2	76.5	111.1	101.5	108.8

또한, 수도물 수질사고의 상당 부분이 시설 노후화뿐만 아니라 직원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바, 상수도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임.

다만, 스마트 상수도 구축의 경우 향후 5년간 260,500수전에 대해 온라인 원격검침을 도입하는데 있어 2,34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수전당 평균 설치비용을 88만원<sup>8)</sup> 수준으로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고 2021년도 설치물량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미 반영(총 102억원, 국비(51억원) 매칭)되어 있음.

따라서 현 설치단가<sup>9)</sup>(평균 19만원/수전)에 맞추고 내년도 기반영분을 재조정하여 투자재원을 산출해야 할 것이며, 원론적으로 원격검침의 기술적 완성도 및 통신방식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다면 안정화가 기대되는 2023년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임.

#### <원격검침서비스 구축 투자 계획>

(단위: 억원, 개소)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투자금액	2,340					
설치개소	260,500(전체)	53,500	53,500	53,500	50,000	50,000
	250,000(신규)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10,500(검침장애)	3,500	3,500	3,500		

8) 당초 설치단가 : 883,000원

- 대형 검침장애 수전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과다 계산

9) 현 설치단가(2021년 예산안 편성 기준) : 190,000원

- 검침단말기 115,000원, 디지털계량기 75,000원



### 3) 수도요금 인상안 관련(안 별표2)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까지 3개년 동안 수도요금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며, 공공용을 일반용으로 업종을 통합하고 3단계 누진단계를 단일 요금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노후 상수도시설의 원활한 정비를 위한 재정수입 확보,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실효성 및 업무효율성 확보 등을 고려한다면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상수도 효율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자료분석 용역<sup>10)</sup>」을 실시하였고 동 용역 결과에서는 지속적인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수도요금 현실화를 하락과 향후 재정수입을 상회하는 투자수요 등을 감안한 수도요금 인상, 실효성이 낮은 3단계 누진요금 부과방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한 바 있음.

다만,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 경제의 침체 국면에서 수도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인상 폭이나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세부적으로 안 별표2의 업종별, 사용량 구간별 사용요금을 살펴보면, 가정용의 경우 대부분을(95.3%) 차지하는 30<sup>m</sup> 이하 구간의 사용요금은 2021년의 경우 360원에서 430원으로 70원(19.4%) 인상되고 이를 4인 가구당 수도요금으로 환산해보면 월평균 1,68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수준임.

10) ㈜한국수도경영연구소('19.10.24 ~ '19.12.2)

### <가구당 수도요금 인상안>

(단위: 원,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인상률	연평균 인상률
2인 가구 12톤(4,320)	5,160 (840)	6,000 (840)	6,960 (960)	61.1	20.4
4인 가구 24톤(8,640)	10,320 (1,680)	12,000 (1,680)	13,920 (1,920)	61.1	20.4

또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 등에 해당되는 욕탕용(500<sup>m</sup> 이하)과 일반용(50<sup>m</sup> 이하)의 경우 인상률이 각각 36.1%(130원 인상), 27.5%(220원 인상)로 평균 인상률 11.7%보다 높은 수준이며, 이는 누진단계 축소(폐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용량 최저(1단계) 구간의 인상폭을 크게 설정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

그리고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공공용의 경우 2022년 일반용과의 업종 통폐합을 고려하여 인상폭을 크게 설정함에 따라 50<sup>m</sup> 이하 구간의 경우 인상률이 무려 61.4%(570원 → 920원)에 달하고 있음.

사 용 요 금(원/㎡)			비율(%)	
구분	사용구분(㎡)		전체	업종별
			100	
가정용	0~30이하	360	85.1	95.3
	30초과~50이하	550		4.2
	50초과	790		0.5
욕탕용	0~500이하	360	0.0	21.3
	500초과~2,000이하	420		42.4
	2,000초과	560		36.5
공공용	0~50이하	570	3.5	54.3
	50초과~300이하	730		26.7
	300초과	830		18.9
일반용	0~50이하	800	11.4	75.2
	50초과~300이하	950		21.0
	300초과	1,260		3.8

<현행>

사 용 요 금(원/㎡)				
구분	사용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부터
가정용	구분 없음	430	500	580
욕탕용	0~500이하	490	570	620
	500 초과	510		
공공용	0~300이하	920	폐지 (일반용으로 통합)	
	300 초과	1,040		
일반용	0~300이하	1,020	1,160	1,270
	300초과	1,150		

<개정안>

#### 4) 종합의견

- 수도요금 인상(업종통폐합, 누진요금 부과방식 개선 포함)은 노후 상수도시설의 원활한 정비를 위한 재정수입 확보,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실효성 및 업무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음.

다만, 수도요금 인상안의 기초가 되는 중기투자 계획 중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확대의 경우 사업비가 과다하게 산출되고 본예산에 기반영(2021년도분) 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고 나아가 도입 시기를 재조정하여 사업비를 감액함으로써 제안된 수도요금 인상 규모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시기까지도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 한편, 수도요금 인상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행정안전부 권고비율 수준으로 개선되겠지만, 시간 경과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이후 다시 하락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경영합리화 등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변안) 요지

- 중기 투자계획의 오류를 바로 잡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과 회복시기를 감안하여 수도요금 인상폭과 시행시기를 조정함.
-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한시적으로 추가함

8. 심사결과 : 변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

의안 번호	관련 1865
----------	------------

제안일자 : 2021년 4월 28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 1. 제안이유

2020년 12월 17일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50%)할 수 있도록 이를 반영하여 번안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를 한시적으로 추가함(안 제31조제1항제11호)
- 나. 수도요금표의 업종별 사용요금 단가를 일부 조정함(안 별표 2)
- 다. 조례 시행일 및 수도요금표 변경에 따른 적용례를 수정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

2020년 12월 17일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 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번안한다.

안 제31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 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안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표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2021년은 7월 1일부터, 2022년과 2023년은 1월 1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용일 전날까지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적용일 전날이 속한 달 또는 연도의 요율로 날 수대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 별표 2 】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제23조 관련)**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사 용 요 금(원/m <sup>3</sup> )				
구 경 (mm)	요 금 (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m <sup>3</sup> )	적용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부터
15	1,080	가정용	구분 없음	390	480	580
20	3,000					
25	5,200					
32	9,400	육탕용	0~500	400	440	500
40	16,000		500초과	440		
50	25,000					
65	38,900					
75	52,300	공공용	0~300	920	폐 지 (일반용으로 통합)	
100	89,000		300초과	1,040		
125	143,000					
150	195,000					
200	277,000	일반용	0~300	980	1,150	1,270
250	375,000		300초과	1,040		
300	465,000					
350	565,000					
400이상	615,000					

## 번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번 안
<p>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p> <p>1. ~ 10. (생략)</p> <p>11. (생략) ② (생략)</p>	<p>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p> <p>----- ----- ----- ----- ----- ----- ----- ----- -----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p> <p>----- ----- ----- ----- ----- ----- ----- ----- ----- ----- ----- -----</p> <p>1. ~ 10. (개정안과 같음)</p> <p>11.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p>	<p>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p> <p>----- ----- ----- ----- ----- ----- ----- ----- ----- ----- ----- -----</p> <p>1. ~ 10. (개정안과 같음) 11. 「<u>소상공인기본법</u>」 제2조에 해당하는 <u>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u></p> <p>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p>



(별표 1)

급수업종 구분표(제23조 관련)

업종별	구분 내용
가정용	가. ~ 아. (생략) 자. 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노인복지주택과 고시원(단, 오피스텔 제외)
유통용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단, 관광호텔안의 목욕장은 일반용 적용)
공공용	가. 공공시설에 대한 급수로 다음 "나"호부터 "히"호를 포함한다 나. 소화전 및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다. 시립 및 구립 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라. 공장등록을 필한 준 공업지역내의 공장(준공업지역내 상가와 분리된 아파트형 공장 포함)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직영사업, 출연 연구기관 포함) 바. 학교(유치원 포함) 사. 정당 아. 병영 자. 신문사, 방송국 차. 시장이 지정한 무료 공중이용 화장실에 대한 급수 카. 수도시설이설 등에 따른 퇴수·세척용수(단, 최종단계 요율 적용) 타. 의료기관(「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마원, 안마시술소 포함) 파. 종교법인에 등록된 종교단체 하. 철도운송업 및 도시철도 운송업

(별표 1)

급수업종 구분표(제23조 관련)

업종별	구분 내용
가정용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_____ _____ (다만, _____)
유통용	가. _____ _____ (다만, _____)
(삭제)	

(별표 1)

급수업종 구분표(제23조 관련)  
(개정안과 같음)

--	--

(별표 1)

급수업종 구분표(제23조 관련)  
(개정안과 같음)

--	--

<p>가.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수</p> <p>나. 임시급수,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p> <p>다. 수도시설 파손 등 손괴로 인한 누수량(퇴수·세척용수 포함) 및 급수차사용량과 <u>운반급수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u></p>	<p>〈삭 제〉</p> <p>가.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 <u>경우로 한정</u></p> <p>나. _____</p> <p>_____</p> <p>_____ <u>운반급수</u></p>		
<p>〈신 설〉</p>	<p>다. 소화전 및 급수탑에 의한 급수(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로 한정)</p>		
<p>〈신 설〉</p>	<p>라. 시립 및 구립 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로 한정)</p>		
<p>〈신 설〉</p>	<p>마. 공장등록을 필한 준 공업지역 내의 공장(준공업지역내 상가와 분리된 아파트형 공장 포함)</p>		
<p>〈신 설〉</p>	<p>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직영사업, 출연 연구기관 포함)</p>		
<p>일반 용</p> <p>〈신 설〉</p>	<p>사. 학교(유치원 포함)</p>		
<p>〈신 설〉</p>	<p>아. 정당</p>		
<p>〈신 설〉</p>	<p>자. 병영</p>		
<p>〈신 설〉</p>	<p>차. 신문사, 방송국</p>		
<p>〈신 설〉</p>	<p>카. 시장이 지정한 무료 공중이용 화장실에 대한 급수</p>		
<p>〈신 설〉</p>	<p>타. 수도시설이설 등에 따른 퇴수 세척용수</p>		
<p>〈신 설〉</p>	<p>파. 의료기관(「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마원, 안마시술소 포함)</p>		
<p>〈신 설〉</p>	<p>하. 종교법인에 등록된 종교단체</p>		
<p>〈신 설〉</p>	<p>기. 철도운송업 및 도시철도 운송업</p>		
<p>〈신 설〉</p>	<p>니. 그 밖에 가정용 또는 욕탕용에 속하지 않는 급수</p>		
<p>〈신 설〉</p>			

〔별표 2〕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제23조 관련)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 요금		사 용 요 금		
구 경 (밀리미 터)	요 금 (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 당 단가(원)
15	1,080	가정용	0~30이하	360
20	3,000		30초과~50이하	550
25	5,200		50초과	790
32	9,400		0~500이하	360
40	16,000	육탕용	500초과~2,000이하	420
50	25,000		2,000초과	560
65	38,900		0~50이하	570
75	52,300		50초과~300이하	730
100	89,000	공공용	300초과	830
125	143,000		0~50이하	800
150	195,000		50초과~300이하	950
200	277,000		300초과	1,260
250	375,000	일반용	0~300	920
300	465,000		300초과	1,040
350	565,000		0~300	980
400이상	615,000		300초과	1,150

〔별표 2〕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제23조 관련)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 요금		사 용 요 금				
구 경 (밀리미 터)	요 금 (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	적용연도		
				2021년	2022 년	2023 년부터
15	1,080	가정용	구분 없음	430	500	580
20	3,000		0~500	490		
25	5,200		육탕용		570	620
32	9,400		500초과	510		
40	16,000	육탕용	0~300	920		
50	25,000		공공용			레 지 (인민중으로 포함)
65	38,900		300초과	1,040		
75	52,300		0~300	1,020		
100	89,000	공공용	일반용		1,160	1,270
125	143,000		300초과	1,150		
150	195,000		0~300	980		
200	277,000		300초과	1,040		
250	375,000	일반용	일반용		1,150	1,270
300	465,000		0~300	980		
350	565,000		300초과	1,040		
400이상	615,000		0~300	980		

〔별표 2〕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제23조 관련)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 요금		사 용 요 금				
구 경 (밀리미 터)	요 금 (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	적용연도		
				2021년	2022 년	2023 년부터
15	1,080	가정용	구분 없음	390	480	580
20	3,000		0~500	400		
25	5,200		육탕용		440	500
32	9,400		500초과	440		
40	16,000	육탕용	0~300	920		
50	25,000		공공용			레 지 (인민중으로 포함)
65	38,900		300초과	1,040		
75	52,300		0~300	980		
100	89,000	공공용	일반용		1,150	1,270
125	143,000		300초과	1,040		
150	195,000		0~300	980		
200	277,000		300초과	1,040		
250	375,000	일반용	일반용		1,150	1,270
300	465,000		0~300	980		
350	565,000		300초과	1,040		
400이상	615,000		0~300	980		

〔별표 2〕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제23조 관련)  
(수정안과 같음)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 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옥탕용에 한해 적용)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표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2021년은 7월 1일부터, 2022년과 2023년은 1월 1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용일 전날까지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적용일 전날이 속한 달 또는 연도의 요율로 날 수대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제3조(급수업종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공용으로 분류되었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량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 별표 1 】

**급수업종 구분표**(제23조 관련)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가. 전용 및 공용 급수설비에 따라 주거용으로 급수하는 것 나.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 다.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라.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마.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바. 기숙사 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사회구호단체, 국가유공자단체 아. 공동주택단지내 관리사무소·경비실·공동화장실·노인정·음수대·운동시설(영업행위를 하는 운동시설 제외)등에 대한 급수 자. 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노인복지주택과 고시원(다만, 오피스텔은 제외)
욕탕용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다만, 관광호텔안의 목욕장은 일반용 적용)
일반용	가. 임시급수,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로 한정) 나. 수도시설 파손 등 손괴로 인한 누수량(퇴수·세척용수 포함) 및 급수차사용량과 운반 급수 다. 소화전 및 급수탑에 의한 급수(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로 한정) 라. 시립 및 구립 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로 한정) 마. 공장등록을 필한 준 공업지역내의 공장(준공업지역내 상가와 분리된 아파트형 공장 포함)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직영사업, 출연 연구기관 포함) 사. 학교(유치원 포함) 아. 정당 자. 병영 차. 신문사, 방송국 카. 시장이 지정한 무료 공중이용 화장실에 대한 급수 타. 수도시설이설 등에 따른 퇴수·세척용수 파. 의료기관(「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안마시술소 포함) 하. 종교법인에 등록된 종교단체 거. 철도운송업 및 도시철도 운송업 너. 그 밖에 가정용 또는 욕탕용에 속하지 않는 급수

【 별표 2 】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제23조 관련)**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사 용 요 금(원/㎥)				
구 경 (mm)	요 금 (원)	업종 구분	사용구분 (m <sup>3</sup> )	적용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부터
15	1,080	가정용	구분 없음	390	480	580
20	3,000					
25	5,200					
32	9,400	육탕용	0~500	440	500	
40	16,000		500초과			440
50	25,000					
65	38,900	공공용	0~300	920	폐 지 (일반용으로 통합)	
75	52,300					
100	89,000		300초과	1,040		
125	143,000					
150	195,000					
200	277,000	일반용	0~300	980	1,150	1,270
250	375,000					
300	465,000		300초과	1,040		
350	565,000					
400이상	615,000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p> <p>1. ~ 10. (생략)</p> <p><u>&lt;신설&gt;</u></p> <p>11. (생략)</p> <p>② (생략)</p>	<p>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 -----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소상공인기본법</u>」 제2조에 해당하는 <u>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 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옥탕용에 한해 적용)</u></p> <p>12. (현행 제11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급수업종 구분표(제23조 관련)		[별표 1] 급수업종 구분표(제23조 관련)	
업종별	구 분 내 용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가. ~ 아. (생 략) 자. 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노인복지주택과 고시원 (단, 오피스텔 제외)	가정용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 ----- (다만, -----)
욕탕용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단, 관광호텔안의 목욕장은 일반용 적용)	욕탕용	가. ----- (다만, -----)
공공용	가. 공공시설에 대한 급수로 다음 “나”호부 터 “하”호를 포함한다 나. 소화전 및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 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다. 시립 및 구립 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 육시설에 한함) 라. 공장등록을 필한 준 공업지역내의 공장 (준공업지역내 상가와 분리된 아파트 형 공장 포함)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직영사업, 출연 연 구기관 포함) 바. 학교(유치원 포함) 사. 정당 아. 병영 자. 신문사, 방송국 차. 시장이 지정한 무료 공중이용 화장실에 대한 급수 카. 수도시설이설 등에 따른 퇴수·세척용 수(단, 최종단계 요율 적용) 타. 의료기관(「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 한 안마원·안마시술소 포함) 파. 종교법인에 등록된 종교단체 하. 철도운송업 및 도시철도 운송업	공공용	<삭 제>

<p>가.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수</p> <p>나. 임시급수,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p> <p>다. 수도시설 파손 등 손괴로 인한 누수량(퇴수·세척용수 포함) 및 급수차사용량과 <u>윤반급수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u></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일반용 &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삭 제&gt;</p> <p>가. -----경우로 한정)</p> <p>나. ----- -- 윤반급수</p> <p>다. 소화전 및 급수탑에 의한 급수(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로 한정)</p> <p>라. 시립 및 구립 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로 한정)</p> <p>마. 공장등록을 필한 준 공업지역내의 공장(준공업지역내 상가와 분리된 아파트형 공장 포함)</p> <p>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직영사업, 출연 연구기관 포함)</p> <p>사. 학교(유치원 포함)</p> <p>아. 정당</p> <p>자. 병영</p> <p>차. 신문사, 방송국</p> <p>카. 시장이 지정한 무료 공중이용 화장실에 대한 급수</p> <p>타. 수도시설이설 등에 따른 퇴수·세척용수</p> <p>파. 의료기관(「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마원·안마시술소 포함)</p> <p>하. 종교법인에 등록된 종교단체</p> <p>거. 철도운송업 및 도시철도 운송업</p> <p>너. 그 밖에 가정용 또는 욕탕용에 속하지 않는 급수</p>
--	---

[별표 2]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 (제23조 관련)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사 용 요 금		
구 경 (밀리미터)	요 금 (원)	구분	사용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업종		
15	1,080	가정용	0~30이하	360
20	3,000		30초과~50이하	550
25	5,200		50초과	790
32	9,400			
40	16,000	욕탕용	0~500이하	360
50	25,000		500초과~2,000이하	420
65	38,900		2,000초과	560
75	52,300			
100	89,000	공공용	0~50이하	570
125	143,000		50초과~300이하	730
150	195,000		300초과	830
200	277,000			
250	375,000	일반용	0~50이하	800
300	465,000		50초과~300이하	950
350	565,000		300초과	1,260
400이상	615,000			

[별표 2]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 (제23조 관련)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사 용 요 금(원/m <sup>3</sup> )					
구 경 (밀리미터)	요 금 (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m <sup>3</sup> )	적용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부터	
15	1,080	가정용	구분 없음		390	480	580
20	3,000						
25	5,200						
32	9,400						
40	16,000	욕탕용	0~500	400	440	500	
50	25,000		500초과	440			
65	38,900						
75	52,300						
100	89,000	공공용	0~300	920	폐지 (일반용으로 통합)		
125	143,000		300초과	1,040			
150	195,000						
200	277,000						
250	375,000	일반용	0~300	980	1,150	1,270	
300	465,000		300초과	1,040			
350	565,000						
400이상	615,000						